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중
수급인의 지급 2회 이상 지체를 1회 이상 지체로 변경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29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252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중 수급인의 지급 2회 이상 지체를 1회 이상 지체로 변경(안 제35조제2항제3호)	3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252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29.

다. 회 부 일 : 2025. 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3. 검토의견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중 수급인의 지급 2회 이상 지체를 1회 이상 지체로 변경(안 제3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생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 -----1회-----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수급인¹⁾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와 관련된 발주자²⁾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을 ‘2회 이상 지체’에서 ‘1회 이상 지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³⁾는 수급인이 현행법 제34조제1항⁴⁾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07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⁵⁾

중전 법률은 제35조제1항제3호가목⁶⁾에서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재량) 규정하고 있었으나,⁷⁾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5)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5.17. 일부개정, 2008.1.1. 시행)

6)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5230호, 1996.12.30. 전부개정, 1998.1.1. 시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007년 5월 개정 법률은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⁸⁾⁹⁾

7) 공공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의 재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8)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5.17. 일부개정, 2008.1.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9)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5.17. 일부개정, 2008.1.1. 시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이상 지체’라는 요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정리 】

지급일 약정 여부	발주자 기성금 지급여부	약정 지급일	법정 지급일	법률 규정	
약정	지급	기성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약정한 지급일	「건설산업기본법」 10) 및 「하도급법」	
		기성금 지급일부터 15일 초과	기성금 지급일 + 15일		
	미지급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약정한 지급일	「하도급법」 11)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초과	목적물 수령일 + 60일		
미약정	지급	-	목적물 수령일 ¹²⁾		
	미지급				

※자료: 김석원, 김주호, “건설산업기본법 쉽게 이해하기”, 대한경제, 2023.7., p.326.

10)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이상 지체’라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어렵게 될 수 있는바,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III. 공정화지침

11.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13조)

- 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을 ‘2회 이상 지체’에서 ‘1회 이상 지체’로 변경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하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과 고용 또는 거래 관계에 있는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사자 간 대금 지급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수급인의 일시적 대금 지급 불능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도 1회 지체만으로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대금 1회 미지급이라는 사유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계약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법익 균형을 감안하여 현행법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청구권 신속 확보로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고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대여 업체 등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